

울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 준 정 보

1 [02020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관찰·평가를 통해 환경적·신체적 원인을 분석하고 발달 지연 영역(발달기초, 언어발달, 초기인지, 정서·사회성 등)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 조기중재 서비스를 설계하여 제공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만6세 이하 ○ 선정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신청 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 제출) 2. 부모협조 하에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의 검사의뢰를 통하여 실시한 발달검사(KDEP, K-ASQ, K-CDI 등) 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신청 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의 검사의뢰서 및 검사결과 첨부)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부서 확인) ○ 우선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병원 건강검진결과 발달지연 영유아 2. 병원 건강검진결과 발달경계 또는 추후 검사 필요등급 영유아 3. 유아교육기관장 검사의뢰를 통한 발달검사 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 영유아 ※ 우선순위별 세부 순위는 조부모, 장애부모, 한부모, 다문화가구, 영유아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③ 제공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교사, 전문상담 교사(이하 “전문상담교사”)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 “의료법” 제7조에 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이하 “임상심리사”) 2.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문제 행동아동이나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 등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학위 취득 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학위 취득 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4.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 등 관련학과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200천원/월 <table border="1" data-bbox="384 1765 1366 1955"> <thead> <tr> <th>구분</th> <th>1등급</th> <th>2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수급자,차상위~중위소득50%이하</td> <td>중위소득50%초과~120%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80천원</td> <td>160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20천원</td> <td>40천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규제 완화사업 : 기준가격 대비 20%상향, 240천원까지 가능(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구분	1등급	2등급	대상자	수급자,차상위~중위소득50%이하	중위소득50%초과~120%이하	정부지원금	180천원	16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40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대상자	수급자,차상위~중위소득50%이하	중위소득50%초과~120%이하											
정부지원금	180천원	16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40천원											

항목	내용								
<p>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p>	<p>○ 서비스 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391 293 1394 633"> <thead> <tr> <th data-bbox="391 293 1259 331">서비스 내용</th> <th data-bbox="1259 293 1394 331">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91 331 1259 555"> 1. 기본서비스 ① 발달기초영역 : 기본적 대근육, 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② 언어발달영역 : 의사소통 기능기술 및 어휘발달 촉진 ③ 초기인지영역 :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촉진 ④ 정서·사회성영역 : 기본적인 정서표현 및 가족·타인과의 사회성 활동 촉진 ※ 집단규모 1:1 서비스 제공 시, 주1회 (회당 50분/부모상담 10분) ※ 집단규모 1:2 이상 제공 시, 주2회 (회당 60분) </td> <td data-bbox="1259 331 1394 555">주2회 회당 60분</td> </tr> <tr> <td data-bbox="391 555 1259 593">2. 부모상담 및 교육</td> <td data-bbox="1259 555 1394 593">월1회</td> </tr> <tr> <td data-bbox="391 593 1259 633">3. 서비스 결과 월별 보고서 작성 및 배부</td> <td data-bbox="1259 593 1394 633">월1회</td> </tr> </tbody> </table> <p>○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 서비스 신청 영유아 대상 관찰·평가를 통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사전검사 의무 실시) 2단계 : 조기중재 서비스 및 부모 상담 서비스 제공 실시 3단계 : 매월 해당 아동에 대한 서비스 결과 보고서 발송 및 모니터링 실시 4단계 : 필요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교과부 특수교육 등 기타서비스 연계 의무화(사후검사 실시) <p>※ 서비스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K-CDI, CBCL) 의무실시 ※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p>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1. 기본서비스 ① 발달기초영역 : 기본적 대근육, 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② 언어발달영역 : 의사소통 기능기술 및 어휘발달 촉진 ③ 초기인지영역 :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촉진 ④ 정서·사회성영역 : 기본적인 정서표현 및 가족·타인과의 사회성 활동 촉진 ※ 집단규모 1:1 서비스 제공 시, 주1회 (회당 50분/부모상담 10분) ※ 집단규모 1:2 이상 제공 시, 주2회 (회당 60분)	주2회 회당 60분	2. 부모상담 및 교육	월1회	3. 서비스 결과 월별 보고서 작성 및 배부	월1회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1. 기본서비스 ① 발달기초영역 : 기본적 대근육, 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② 언어발달영역 : 의사소통 기능기술 및 어휘발달 촉진 ③ 초기인지영역 :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촉진 ④ 정서·사회성영역 : 기본적인 정서표현 및 가족·타인과의 사회성 활동 촉진 ※ 집단규모 1:1 서비스 제공 시, 주1회 (회당 50분/부모상담 10분) ※ 집단규모 1:2 이상 제공 시, 주2회 (회당 60분)	주2회 회당 60분								
2. 부모상담 및 교육	월1회								
3. 서비스 결과 월별 보고서 작성 및 배부	월1회								
⑥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5인 이내 소그룹으로 운영 (1:1~1:5)								
⑦ 서비스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p>○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p> <p>○ 안전관리기준 준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 2. 기관방문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 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 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 <p>○ 추가 확보시설 조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 (사전신고 필수) 2. 등록 시설 기준(33㎡)을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보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 ※ 협약서는 권한 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 (경로당의 경우 지자체 소유는 구군청장, 마을소유 또는 공동주택소유는 각 대표자와 협약) 3.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 ※ 단,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허용 사회복지거주시설 및 거주시설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 불가 4. 추가확보시설 변경 신청 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서식 제16호) 활용 5. 추가확보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인정 불가 <p>○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력산정기준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관련 경력만 인정 2. 경력기간 산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근근무경력 인정(주40시간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 ②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 (고용 또는 산재보험가입확인서 제출) 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ex) 2016.01.01.~2016.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 ※ 구군은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 ※ 제공기관 자체경력의 경우 서비스 경력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록지 등 증빙서류 첨부 <p>○ 서비스 제공기록지는 제공기관 자체 양식 활용 가능하나 필수작성내용(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제공일시, 서비스 내용, 집단규모,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서명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내용을 상세하게 기재</p> <p>○ 제공인력 자격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인력은 제공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 된 사람으로 함. (위탁계약 및 위촉계약 불가)</p>								

2 [010108]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령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2. 욕구판단은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혹은 소견서)는 각 지역 병원,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사(교사)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첨부된 것이어야 함.(진단서(혹은 소견서)의 요약서도 첨부되어야 함) -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CBCL, K-ARS, RCMAS, -PRC, -CYP, PRES/ 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하며,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IV (WPPSI, WAIS포함) 지능검사, K-ABC2 중 하나를 필수로 활용하여야 함.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 임이 확인되어야 함.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 e-음에서 확인) ※ 다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중복 수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지원
③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기관장(슈퍼바이저)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은 제공기관의 인력 중 슈퍼바이저를 1인 이상 지정하도록 하며, 제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겸직할 수 있음 1) 슈퍼바이저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놀이치료학, 미술치료학, 음악치료학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이면서 학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7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이상이면서 석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기존 제공기관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슈퍼바이저를 1인 이상 지정함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슈퍼바이저 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함 2) 슈퍼바이저는 아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기관의 사례회의를 주재하고 논의된 사례에 대해 일정 수준의 슈퍼비전을 제공함 -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소속 기관의 치료사들과 관심 사례를 논의하고 논의 과정을 주도함

	<p>○ 제공인력 자격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이하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 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보건법” 제7조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이하 “임상심리사”) 2.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학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3.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놀이, 미술, 음악,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p>※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p>
--	--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180천원/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50%이하	중위소득50%초과~120%이하	중위소득120%초과~150%이하
	정부지원금	162천원	144천원	126천원
	본인부담금	18천원	36천원	54천원
	<p>○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1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6개월마다 중간점검을 실시(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해)하여 서비스 지속적인 제공여부 및 의뢰 여부를 판단하게 함. - 재판정은 연속적인 서비스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정함 - 재판정을 위해서는 지난 1년간의 서비스에 대한 사전/사후검사결과지, 서비스 종결평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서비스 대상 욕구판정 및 진단서(소견서) 제출과정은 이전 서비스 신청과정과 동일함.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p>1. 기본서비스 (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p>① 언어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 - 효과: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언어로 적절히 표현하며 또래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심리·정서적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짐 <p>② 놀이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극복과 잠재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임 - 효과: 아동·청소년은 놀이를 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불안감이나 방어적 태도가 줄어들고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성취감을 통해 자아 존중감 향상과 다양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 해결에 효과를 가짐 <p>③ 미술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시각적인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 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능력 증진에 도움을 제공함 	<p>월4회 (주1회) 회당50분 (프로그램40분+ 부모상담10분)</p>

- 효과: 미술표현으로 심리적 불안정과 손상된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시기의 자기표현 및 자아개념, 대인관계 기술을 발달 시키며 문제행동 감소와 원만한 상호소통 및 적응에 긍정적 효과를 보임
- ④ 음악프로그램
 - 내용: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문제성 있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 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내적/외적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치료계획 수립과 음악활동을 실행함
 - 효과: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감각 및 인지,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아동·청소년의 긍정적인 정서발달과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성장을 도움
- ⑤ 심리상담프로그램
 - 내용: 아동·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특성을 학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상담을 통해 사고, 정서, 행동 측면의 문제를 스스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함
 - 효과: 특히 청소년들은 다른 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말로써 표현하므로 직접적인 문제해결의 효과를 피할 수 있으며,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의 심리·정서적인 안정과 정신건강에 효과를 보임
 - * 심리상담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의 심리치료적 개입을 포함하며 치료적 필요에 따라 회기별 상담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는 변동될 수 있음.
 - 부모상담
 - :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면담) 서비스
 - * 부모상담의 유형은 아래의 3가지 방식 중 1가지를 택하여 진행할 수 있음
 - 기본프로그램 제공 후 10분 이상의 부모상담을 실시 함
 -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아동과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부모상담만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심리검사(사전·사후)
 - : 심리평가도구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심리·행동 문제를 진단하고 변화를 측정함
 - * 심리검사는 기본서비스 시작 시 기본 프로그램 영역별 검사 도구에 의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서비스 종결 시 동일한 검사도구로 사후검사도 실시함.
 - * 사전, 사후검사 심리평가도구는 [별표3] 참고

2. 부가서비스(선택)

- ①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필요시)
- ② 부모교육 : 아동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수시)

필요시 및 수시

○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청소년의 문제특성 및 유형에 적합한 영역별 프로그램(언어, 놀이, 미술, 음악, 심리상담)을 선택하고 이용자 욕구, 사전·사후검사, 서비스 내용, 제공절차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및 관리해야 함.

① 1단계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계약 단계

(*서비스 영역별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진단을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이용자 상담 및 욕구 파악
- 사전검사 (필수실시-[별표 3]의 심리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기초선 측정 및 결과지 첨부)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사전검사는 [별표 3]에서 제시하는 심리평가도구를 2개 이상 활용함 (단, 점수화 또는 등급화가 가능한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도구(공통)와 상담사가 서술식으로 기술하는 주관적 심리평가도구 각각 1개 이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일한 검사도구를 사용하며 2개 이상의 (객관+주관 평가도구)의 평가도구를 활용함(단, 만 3세 이하의 유아인 경우는 객관적 평가도구의 활용은 제외할 수 있음) - 서비스 대상 진입 시 욕구판단을 위해 사용한 객관적 심리평가도구(별표 3의 공통에 포함되는 심리평가도구)는 사전검사 시 재검사 없이 그대로 활용 가능함. -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 -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상호작성 및 배부 <p>② 2단계 : 서비스 제공 및 중간점검 단계 (*계약이 완료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및 중간점검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 서비스 당일 2회 연속제공 불가 (단, 보강만 허용) - 서비스 중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계약 기간(1년)을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1/2시점에 제공인력에 의해 실시. ·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욕구변화 · 초기 서비스 목표에 따른 이용자의 변화 정도, 추후개입 계획과 제공 서비스의 지속여부, 서비스 변경 내용 등을 기록한 중간평가서 작성 <p>③ 3단계 : 서비스 종료 단계 (*서비스 제공 종료 및 재 욕구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검사(필수실시-사전검사와 동일한 심리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이용자 변화 측정 및 분석결과 제시) - 사후 심리검사 결과를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종결상담과 종결보고서 작성 - 이용자 및 보호자에 대한 서비스 재 욕구조사 - 종료 시점(계약 기간 만료일. 단, 기타 사항으로 종료되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함) - 서비스 종료 통보
⑥ 집단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서비스 프로그램의 집단규모는 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 이용 (1:1)을 원칙으로 함. ○ 단, 집단서비스가 1:1 서비스 보다 효과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인력 소견서, 보호자 동의서를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소집단 프로그램(1:2~1:3)허용. ○ 소집단(1:2) 프로그램의 제공시간은 회당 총 70분으로 프로그램 50분, 부모상담 20분으로 배분 ○ 소집단(1:3) 프로그램의 제공시간은 회당 총 90분으로 프로그램 60분, 부모상담 30분으로 배분 ○ 서비스 집단규모가 1:2인 이상일 경우, 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제공장소(소재지)를 필히 작성
⑦ 서비스 실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 안전관리기준 준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 2. 기관방문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 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 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 ○ 추가 확보시설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 (사전신고 필수) 2. 등록 시설 기준(33m)을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보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서는 권한 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 (경로당의 경우 지자체 소유는 구군청장, 마을소유 또는 공동주택소유는 각 대표자와 협약)

- 3.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
 - ※ 단,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허용
 - 사회복지거주시설 및 거주시설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 불가
- 4. 추가확보시설 변경 신청 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서식 제16 호) 활용
- 5. 추가확보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인정 불가
-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 1. 경력산정기준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관련 경력만 인정
 - 2. 경력기간 산정
 - ① 상근근무경력 인정(주40시간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
 - ②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 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 (고용 또는 산재보험가입확인서 제출)
 - 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 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ex) 2016.01.01.~2016.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
- ※ 구·군은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
- ※ 제공기관 자체경력의 경우 서비스 경력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록지 등 증빙서류 첨부
- 서비스 제공기록지는 제공기관 자체 양식 활용 가능하나 필수작성내용(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제공 일시, 서비스 내용, 집단규모,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서명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 제공기관장(수퍼바이저) 지정기준 : 제공기관은 반드시 상근근무(전일제) 인력을 수퍼바이저로 지정하여야 함.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인력은 제공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 된 사람으로 함. (위탁계약 및 위촉계약 불가)
- 진단서, 부모보고검사결과지, 소견서요약본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능. 단 전문가보고 검사 도구는 1년 이내 가능

[별표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사전. 사후 검사의 심리평가도구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사전검사는 [별표 3]에서 제시하는 심리평가도구를 2개 이상 활용함 (단, 점수화 또는 등급화가 가능한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도구와 치료사가 서술식으로 기술하는 주관적 심리평가도구 각각 1개 이상 활용)
- 만 3세 이하의 유아인 경우는 객관적 평가도구의 활용은 제외할 수 있음
-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일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함
- 서비스 대상의 진입 시 욕구판단을 위해 사용한 심리평가도구([별표 3]의 공통에 포함되는 심리평가도구)는 사전검사로 활용 가능함.
- 제공기관은 심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해당 자료를 보관·관리함

구분	서비스 영역	심리평가도구
기본 서비스	언어프로그램	PRES, REVT, SELSI, U-TAP(APAC), P-FA
	놀이/미술/음악 상담 프로그램	놀이평가, 덴버검사, HTP, K-HTP, KFD, SCT, KSD, K-YSR, MT-MAP, IMTAP, MMPI
	공통 (서비스 대상 욕구판단)	K-CBCL, K-ARS, RCMAS, K-PRC, K-CYP

항목	내 용
⑥ 집단규모	○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글로벌아동홈스쿨은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2인 이내(1:1~1:12) ※ 집단규모가 1:2이상일 경우, 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제공장소(소재지)를 필히 기입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 재가방문형 + 집단활동형(집단활동형은 서비스 제공 중 필요시에만 활용가능) ○ 안전관리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 2. 기관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 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 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 3. 집단활동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공인력 응급처치교육 연4시간 이상 의무수료 ② 표준계약서 안전사고에 대한 기준 제시 ③ 서비스 이용자 여행자보험가입 필수 ④ 서비스 이용자 안전교육 대장, 비상연락망, 보호자 동의서 ⑤ 체험시설 안전확인 대장 ⑥ 여행사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차량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운전기사 재직증명서 구비 ※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위험에 대비하여 사전·사후조치를 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지사·지부·가맹점 등 포함), 협력기관, 제공인력 등의 의무 이행 행태, 부정행위 등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추가 확보시설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 (사전신고 필수) 2. 등록 시설 기준(33㎡)을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보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 ※ 협약서는 권한 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 (경로당의 경우 지자체 소유는 구·군청장, 마을소유 또는 공동주택소유는 각 대표자와 협약) 3.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 ※ 단,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허용 사회복지거주시설 및 거주시설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 불가 4. 추가확보시설 변경신청 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서식 제16호) 활용 5. 추가확보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인정 불가 ○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력산정기준 :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관련 경력만 인정 2. 경력기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근근무경력 인정(주40시간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 ②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 (고용 또는 산재보험가입확인서 제출) 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ex) 2016.01.01.~2016.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 ※ 구·군은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 ※ 제공기관 자체경력의 경우 서비스 경력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록지 등 증빙서류 첨부 ○ 서비스 제공기록지는 제공기관 자체 양식 활용 가능하나 필수작성내용(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제공 일시, 서비스 내용, 집단규모,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서명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인력은 제공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 된 사람으로 함. (위탁계약 및 위촉계약 불가)

4 [990108] 아동 체험활동 지원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아동을 대상으로 교과 및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라이프코칭으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정서발달을 지원하고 집단활동을 통한 사회성 향상과 자기 주도적 리더로서의 성장을 도모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득 : 중위소득 120% 이하 ○ 연 령 : 만7세~만12세(초등학생) ○ 우선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손가구의 아동, 2. 장애부모(지적, 언어, 청각, 시각, 지체 등의 순)의 아동 3. 한부모 가구의 아동 4. 다문화가구(결혼이민자, 귀화자)의 아동 ※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아동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③ 제공인력	1. 아동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소년상담사,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이하 “사회복지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②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③ 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과 학사학위 이상 전공자 또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라이프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서비스제공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④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 ⑤ 인문학, 사회과학, 관광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자연과학 전문학사 이상으로 아동·청소년 체험 분야 서비스제공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180천원/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d9d9;">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40%;">1등급</th> <th style="width: 45%;">2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td> <td>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60천원</td> <td>140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20천원</td> <td>40천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규제 완화사업 : 기준가격 대비 20%상향, 216천원까지 가능(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구분	1등급	2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	정부지원금	160천원	14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40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											
정부지원금	160천원	14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40천원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d9d9;"> <th style="width: 8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0%;">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1. 아동 라이프코칭 활동(필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서발달,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② 예절교육, 인성강화 프로그램 ③ 올바른 가치관 형성 지원 프로그램(가족, 직업, 역사, 국가관 등) </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월2회 회당 8시간</td> </tr> <tr> <td> 2. 사회성 증진 활동(선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아동의 비전형성 지원 프로그램 : 팀별 현장 체험과 토의 등 다양한 미션 수행 ② 조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현장 놀이 </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단계 : 이용자 욕구 상담.조사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사전검사 의무실시) 2. 2단계 :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연간 계획서 보호자에게 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탐방, 울산 기관.기업 연계프로그램 연1회 이상 실시 3. 3단계 : 매월 아동에 대한 서비스 계획.결과(소감문, 감상문 등) 결과물 취합.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실시 아동들의 활동 결과물에 대한 전시회, 발표회 실시 4. 4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사후검사 의무실시) ※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자아존중감척도) 의무실시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아동 라이프코칭 활동(필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서발달,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② 예절교육, 인성강화 프로그램 ③ 올바른 가치관 형성 지원 프로그램(가족, 직업, 역사, 국가관 등) 	월2회 회당 8시간	2. 사회성 증진 활동(선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아동의 비전형성 지원 프로그램 : 팀별 현장 체험과 토의 등 다양한 미션 수행 ② 조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현장 놀이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아동 라이프코칭 활동(필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서발달,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② 예절교육, 인성강화 프로그램 ③ 올바른 가치관 형성 지원 프로그램(가족, 직업, 역사, 국가관 등) 	월2회 회당 8시간												
2. 사회성 증진 활동(선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아동의 비전형성 지원 프로그램 : 팀별 현장 체험과 토의 등 다양한 미션 수행 ② 조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현장 놀이 													

항목	내용
⑥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5인 이내 (1:1~1:15)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형태 : 집단활동형 ○ 안전관리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공인력 응급처치교육 연4시간 이상 의무수료 ② 표준계약서 안전사고에 대한 기준 제시 ③ 서비스 이용자 여행자보험가입 필수 ④ 서비스 이용자 안전교육 대장, 비상연락망, 보호자 동의서 ⑤ 체험시설 안전확인 대장 ⑥ 여행사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차량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운전기사 재직증명서 구비 ※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위험에 대비하여 사전.사후조치를 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지사.지부.가맹점 등 포함), 협력기관, 제공인력 등의 의무 이행 행태, 부정행위 등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추가 확보시설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 (사전신고 필수) 2. 등록 시설 기준(33m)을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배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서는 권한 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 (경로당의 경우 지자체 소유는 구·군청장, 마을소유 또는 공동주택소유는 각 대표자와 협약) 3.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허용 사회복지거주시설 및 거주시설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 불가 4. 추가확보시설 변경 신청 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서식 제16호) 활용 5. 추가확보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인정 불가 ○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력산정기준 : 아동체험활동지원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관련 경력만 인정 2. 경력기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근근무경력 인정(주40시간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 ②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 (고용 또는 산재보험가입확인서 제출) 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ex) 2016.01.01.~2016.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 ※ 구·군은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 ※ 제공기관 자체경력의 경우 서비스 경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록지 등 증빙서류 첨부 ○ 서비스 제공기록지는 제공기관 자체 양식 활용 가능하나 필수작성내용(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제공 일시, 서비스 내용, 집단규모,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서명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인력은 제공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 된 사람으로 함. (위탁계약 및 위촉계약 불가)

5 [190108] 실버 맞춤형 활동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생활 및 문화예술 여가 지원으로 실질적 기량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통한 아름답고 건강한 노년 생활의 영위를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득 : 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연 령 : 만60세 이상 ○ 우선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 폭행·학대·방치 및 사회적 고립 등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2. 65세 이상 독거노인 3. 조손가구의 노인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소득수준 순 												
③ 제공 기관 및 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활동 관련(미술, 음악, 체육과 같은 예체능분야) 학사 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2. 문화활동 관련 국가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자 또는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100천원/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d9d9;">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40%;">1등급</th> <th style="width: 40%;">2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td> <td>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88천원</td> <td>84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12천원</td> <td>16천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기간 : 10개월 	구분	1등급	2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	정부지원금	88천원	84천원	본인부담금	12천원	16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											
정부지원금	88천원	84천원											
본인부담금	12천원	16천원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d9d9;"> <th style="width: 8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0%;">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left;"> 1. 생활여가 지원서비스 ① 민속공예, 원예, 십자수, 켈트 등 ② 악기교습, 바둑교실, 당구교실, 명상 수련 등 취미 기량증진서비스 </td>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middle;">주2회 회당 60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 2. 문화예술여가 지원서비스 ① 미술, 도자기, 서예, 음악, 동화구연 등 ② 풍물, 국악, 전통무용, 사교댄스, 발리댄스 등 문화예술 기량증진 서비스 </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 3. 사회참여 지원서비스(필수) ① 자체 합창단, 전시회, 발표회 등 운영 ② 각종 경진대회, 외부 전시회, 발표회 등 참여지원 </td> <td style="vertical-align: middle;">상시</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2.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여가 지원서비스와 문화예술여가 지원서비스를 혼용해서 선택(주2회, 회당 60분) 3.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참여지원서비스 상시제공(연1회 이상) : 자체 기량 경진대회, 발표회, 전시회 등 또는 외부 경진대회, 전시회, 발표회 등의 참여 지원 4. 4단계 : 서비스 이용자 생활만족도 검사 및 사후관리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생활여가 지원서비스 ① 민속공예, 원예, 십자수, 켈트 등 ② 악기교습, 바둑교실, 당구교실, 명상 수련 등 취미 기량증진서비스	주2회 회당 60분	2. 문화예술여가 지원서비스 ① 미술, 도자기, 서예, 음악, 동화구연 등 ② 풍물, 국악, 전통무용, 사교댄스, 발리댄스 등 문화예술 기량증진 서비스	3. 사회참여 지원서비스(필수) ① 자체 합창단, 전시회, 발표회 등 운영 ② 각종 경진대회, 외부 전시회, 발표회 등 참여지원	상시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생활여가 지원서비스 ① 민속공예, 원예, 십자수, 켈트 등 ② 악기교습, 바둑교실, 당구교실, 명상 수련 등 취미 기량증진서비스	주2회 회당 60분												
2. 문화예술여가 지원서비스 ① 미술, 도자기, 서예, 음악, 동화구연 등 ② 풍물, 국악, 전통무용, 사교댄스, 발리댄스 등 문화예술 기량증진 서비스													
3. 사회참여 지원서비스(필수) ① 자체 합창단, 전시회, 발표회 등 운영 ② 각종 경진대회, 외부 전시회, 발표회 등 참여지원	상시												
⑥ 집단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시설에서 서비스 제공시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20인 이내(1:1~1:20)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등)에서 서비스 제공시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0인 이내(1:1~1:10) ※ 집단규모가 1:2인 이상일 경우, 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장소(소재지)를 필히 기입 												

항목	내용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또는 재가방문형(제공기관 선택) ○ 안전관리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 2. 기관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게 대하여 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 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 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 3. 재가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공인력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② 연2회 이상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제공인력 보건 및 안전교육 실시 ○ 추가 확보시설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 (사전신고 필수) 2. 등록 시설 기준(33m)을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보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서는 권한 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 (경로당의 경우 지자체 소유는 구군청장, 마을소유 또는 공동주택소유는 각 대표자와 협약) 3.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허용 사회복지거주시설 및 거주시설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 불가 4. 추가확보시설 변경 신청 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서식 제16호) 활용 5. 추가확보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인정 불가 ○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력산정기준 : 실버맞춤문화활동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관련 경력만 인정 2. 경력기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근근무경력 인정(주40시간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 ②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 (고용 또는 산재보험가입확인서 제출) 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ex) 2016.01.01.~2016.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 ※ 구·군은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 ※ 제공기관 자체경력의 경우 서비스 경력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록지 등 증빙서류 첨부 ○ 서비스 제공기록지는 제공기관 자체 양식 활용 가능하나 필수작성내용(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제공 일시, 서비스 내용, 집단규모,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서명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사회복지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인력은 제공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 된 사람으로 함. (위탁계약 및 위촉계약 불가)

6 [190208] 실버 생활건강 지원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노년의 각종 심리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으로 스트레스 완화, 우울증 해소와 정서안정 지원,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통한 치매예방, 사회성 강화로 노후의 생활건강을 증진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연령 : 만65세 이상 ○ 선정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소견서, 정신보건전문요원1급소견서, 보건소장·정신보건센터장 추천이 있는 경우 2. 치매(치매간이선별검사MMSE-DS,CDR, ADL, 7분치매검사),우울증(노인우울증간이검사 GDS-K, Beck우울증검사, 정신신경증상척도), 스트레스자가척도, 자살생각자가척도 중 증상에 맞춰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검사결과지 제출) 3. 노인폭행·학대·방치 및 사회적으로립 등에 따른 긴급심리지원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 ○ 우선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폭행 및 학대, 사회적으로립방치 등으로 인해 긴급심리치유활동을 요하는 자 2.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 병원 검사결과 위험군으로 선별되어 추천된 자 (진단서, 소견서첨부) 3. 치매, 우울증 등 자가척도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③ 제공 기관 및 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② 심리, 상담,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놀이치료학, 행동치료학 등 인간발달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학위 취득 후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③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노인 심리지원 상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복지사, 예술심리치료사, 심리상담사, 예술전공교원자격증 소지자, 라이프코칭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자 ② 문화활동 관련(미술, 음악, 체육과 같은 예체능분야) 학사 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 문화활동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160천원/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25%;">1등급</th> <th style="width: 25%;">2등급</th> <th style="width: 35%;">3등급</th> </tr> </thead> <tbody> <tr> <td>지원내용</td> <td>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td> <td>중위소득 50%초과 ~120%이하</td> <td>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A)</td> <td>144천원</td> <td>136천원</td> <td>128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B)</td> <td>16천원</td> <td>24천원</td> <td>32천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기간 : 10개월, 재판정1회 (만65세 이상 위험군)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지원내용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50%초과 ~120%이하	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	정부지원금(A)	144천원	136천원	128천원	본인부담금(B)	16천원	24천원	32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지원내용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50%초과 ~120%이하	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														
정부지원금(A)	144천원	136천원	128천원														
본인부담금(B)	16천원	24천원	32천원														

항목	내용						
<p>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p>	<p>○ 서비스 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359 338 1460 1149"> <thead> <tr> <th data-bbox="359 338 1241 405">서비스 내용</th> <th data-bbox="1241 338 1460 405">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59 405 1241 539"> 1.심리상담서비스 ① 개별상담: 사례관리 및 상담(월1회,1:1) ② 집단상담: 사례관리 및 상담(월1회,1:3이내) </td> <td data-bbox="1241 405 1460 539"> 월1회 (회당 60분) </td> </tr> <tr> <td data-bbox="359 539 1241 1149"> 2.심리치유서비스: 각종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개별상담에 따른 치유프로그램(1:1) ① 심리치유: 우울증, 생활스트레스, 자살충동해소를 위한 심리치유활동 ② 정서안정: 심리적 불안장애, 트라우마 등 치유·극복을 위한 정서안정활동 3.인지향상서비스 (1:1) ① 퇴행성기억상실 및 치매 등 예방서비스 ② 심인성기억상실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장애 치유·안정을 위한 인지향상서비스 4.사회참여서비스(월1회만 허용) ① 치매예방, 우울증해소와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② 사회성증진 등 대인관계 확대지원 프로그램 : 심리치유와 정서안정효과 극대화 대체활동(산책 등 야외활동) ※ '심리치유서비스인지향상서비스 월 3회 제공' 또는 '심리치유서비스인지향상서비스 월 2회 + 사회참여서비스 월1회' 로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여 서비스 진행 </td> <td data-bbox="1241 539 1460 1149"> 월3회 (회당 60분) </td> </tr> </tbody> </table> <p>○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 체계적인 평가·진단을 통한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사전 심리검사 의무 실시) 2단계 : 이용자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초기 상태와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변화 진단·분석 ▷ 이용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심리치유, 정서안정, 인지향상) 서비스 제공 ▷ 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회참여서비스 실시 ※ 심리상담·치유, 인지향상, 사회참여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서비스 가능(회당 60분) 3. 3단계 : 서비스 대한 만족도 및 재육구 조사(사후 심리검사 의무실시) <p>※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치매·우울증·스트레스·자살사고 자가척도, 노인생활만족도) 의무 실시</p>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심리상담서비스 ① 개별상담: 사례관리 및 상담(월1회,1:1) ② 집단상담: 사례관리 및 상담(월1회,1:3이내)	월1회 (회당 60분)	2.심리치유서비스: 각종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개별상담에 따른 치유프로그램(1:1) ① 심리치유: 우울증, 생활스트레스, 자살충동해소를 위한 심리치유활동 ② 정서안정: 심리적 불안장애, 트라우마 등 치유·극복을 위한 정서안정활동 3.인지향상서비스 (1:1) ① 퇴행성기억상실 및 치매 등 예방서비스 ② 심인성기억상실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장애 치유·안정을 위한 인지향상서비스 4.사회참여서비스(월1회만 허용) ① 치매예방, 우울증해소와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② 사회성증진 등 대인관계 확대지원 프로그램 : 심리치유와 정서안정효과 극대화 대체활동(산책 등 야외활동) ※ '심리치유서비스인지향상서비스 월 3회 제공' 또는 '심리치유서비스인지향상서비스 월 2회 + 사회참여서비스 월1회' 로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여 서비스 진행	월3회 (회당 60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심리상담서비스 ① 개별상담: 사례관리 및 상담(월1회,1:1) ② 집단상담: 사례관리 및 상담(월1회,1:3이내)	월1회 (회당 60분)						
2.심리치유서비스: 각종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개별상담에 따른 치유프로그램(1:1) ① 심리치유: 우울증, 생활스트레스, 자살충동해소를 위한 심리치유활동 ② 정서안정: 심리적 불안장애, 트라우마 등 치유·극복을 위한 정서안정활동 3.인지향상서비스 (1:1) ① 퇴행성기억상실 및 치매 등 예방서비스 ② 심인성기억상실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장애 치유·안정을 위한 인지향상서비스 4.사회참여서비스(월1회만 허용) ① 치매예방, 우울증해소와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② 사회성증진 등 대인관계 확대지원 프로그램 : 심리치유와 정서안정효과 극대화 대체활동(산책 등 야외활동) ※ '심리치유서비스인지향상서비스 월 3회 제공' 또는 '심리치유서비스인지향상서비스 월 2회 + 사회참여서비스 월1회' 로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여 서비스 진행	월3회 (회당 60분)						
<p>⑥ 집단규모</p>	<p>○ 심리상담서비스, 심리치유서비스, 인지향상서비스 제공시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 원칙</p> <p>○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 제공시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0인 이내 (1:1~1:10)</p>						
<p>⑦ 서비스 실시지역</p>	<p>○ 전 구·군</p>						

항목	내용
<p>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장소로 노인이용시설(경로당) 이용 불가 ○ 안전관리기준 준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 2. 기관방문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 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 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 ○ 추가 확보시설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 (사전신고 필수) 2. 등록 시설 기준(33m)을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보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서는 권한 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 3.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허용 사회복지거주시설 및 거주시설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 불가 4. 추가확보시설 변경 신청 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서식 제16호) 활용 5. 추가확보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인정 불가 ○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력산정기준 : 실버생활건강지원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관련 경력만 인정 2. 경력기간 산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근근무경력 인정(주40시간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 ②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 (고용 또는 산재보험가입확인서 제출) 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ex) 2016.01.01.~2016.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군은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 ※ 제공기관 자체경력의 경우 서비스 경력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록지 등 증빙서류 첨부 ○ 서비스 제공기록지는 제공기관 자체 양식 활용 가능하나 필수작성내용(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제공 일시, 서비스 내용, 집단규모,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서명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인력은 제공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 된 사람으로 함. (위탁계약 및 위촉계약 불가)

항목	내용
⑥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 원칙 (1:1 원칙)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또는 재가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장소로 노인이용시설(경로당) 이용 불가 ○ 안전관리기준 준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 2. 기관방문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게 대하여 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 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 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 3. 재가방문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공인력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② 연2회 이상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제공인력 보건의 안전교육 실시 ○ 추가 확보시설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 (사전신고 필수) 2. 등록 시설 기준(33m)을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보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서는 권한 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 3.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허용 사회복지거주시설 및 거주시설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 불가 4. 추가확보시설 변경 신청 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서식 제16호) 활용 5. 추가확보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인정 불가 ○ 서비스 제공기록지는 제공기관 자체 양식 활용 가능하나 필수작성내용(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제공일시, 서비스 내용, 집단규모,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서명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인력은 제공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 된 사람으로 함. (위탁계약 및 위촉계약 불가)

8 [070101]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득 : 제한없음 ○ 연 령 : 만 18세 이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만 18세 이상도 인정 (재학증명서 별도 제출) ○ 선정기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아동 2. 척수장애 및 근이양증으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발급가능 장애아동 3. 중복장애자 경우 부장애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판정을 수반하는 사람 (장애인등록증제출) ○ 우선순위 : 1. 지체1,2급 및 뇌병변 1, 2, 3급 장애인 2.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의사소견서) 																
③ 제공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공학, 재활공학, 장애인 분야를 전공한 전문학사 이상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장애인복지법" 제72조에 의한 의지.보조기 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3.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장애인 보조, 재활에 관한 민간자격 소지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720천원/반기(120천원/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1등급</th> <th>2등급</th> <th>3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td> <td>중위소득 50% 초과~140% 이하</td> <td>중위소득 140% 초과</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648천원</td> <td>576천원</td> <td>504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72천원</td> <td>144천원</td> <td>216천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만18세 이상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졸업식이 속하는 달까지) 재판정 4회(단, 대기자 수 및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구·군이 자율 결정)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140% 이하	중위소득 140% 초과	정부지원금	648천원	576천원	504천원	본인부담금	72천원	144천원	216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140% 이하	중위소득 140% 초과														
정부지원금	648천원	576천원	504천원														
본인부담금	72천원	144천원	216천원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상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지원서비스 2. 점검 및 유지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예: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②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 및 유지보수(예: AS, 소모품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초기상담 : 대상 아동·청소년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②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및 불만처리, AS 상담 등 연중렌탈 및 점검 </td> <td style="vertical-align: middle;"> 렌탈 12개월 정기점검: 연2회 수시점검: 제한없음 </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단계 : 이용자 상태 파악 및 욕구조사 2. 2단계 : 계약체결, 맞춤형 보조기기 인도 및 대여 서비스 제공 3. 3단계 :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교환·회수 등 사후관리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상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지원서비스 2. 점검 및 유지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예: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②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 및 유지보수(예: AS, 소모품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초기상담 : 대상 아동·청소년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②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및 불만처리, AS 상담 등 연중렌탈 및 점검 	렌탈 12개월 정기점검: 연2회 수시점검: 제한없음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상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지원서비스 2. 점검 및 유지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예: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②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 및 유지보수(예: AS, 소모품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초기상담 : 대상 아동·청소년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②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및 불만처리, AS 상담 등 연중렌탈 및 점검 	렌탈 12개월 정기점검: 연2회 수시점검: 제한없음																
⑥ 집단규모	○ 해당없음 (단, 동일 제공인력이 담당하는 이용자 간 점검·유지보수 등 실제 서비스 시간 중복 금지)																
⑦ 서비스 실시지역	○ 전국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형태 : 재가방문형 ○ 안전관리기준 준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 2. 재가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공인력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② 연2회 이상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제공인력 보건 및 안전교육 실시 																

9 [280108] 건강증진 맞춤형 운동 지도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상태 상담·점검을 통한 맞춤형 신체활동 지원으로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연령 : 만20세 이상 ○ 선정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3개월 이상 임부(신청 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중 제출),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2. 신부전, 심부전,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고지혈증 질환자 또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자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있는 사람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신청 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처방전 중 제출) 3. 만65세 이상 노인 4. 만20세~65세 미만 중 심신의 문제로 운동을 요하는 자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신청 시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중 제출)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부(3개월 이상), 산모(출산 후 1년 미만) 2. 장애인 (장애등급 순) 3. 만성질환자라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자 4. 만20세 이상 심신유약자 중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자 ※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소득수준 준 																																
③ 제공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제공인력은 응급처치교육(4시간 이상)을 연1회 의무이수 2.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체육관련 교원자격증 소지자 ②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 제공종목은 동일하여야함), 동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동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장애인대상에 한함), 동 시행령 제9조의5에 따른 노인스포츠지도사(노인대상에 한하며, 자격종목과 서비스 제공종목은 동일하여야함) 자격증 취득 후 운동지도경력 1년 이상인 자 ③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운동지도경력 1년 이상인 자 ④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과정에 없는 종목의 경우 자격기본법에 의한 해당 민간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이하 “영양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 정교사(이하 “초등정교사”),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에 의한 보건교육사(이하 “보건교육사”), 간호사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임부(임신3개월 이상), 산모(출산 후 1년 미만),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 : 180천원/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d9d9;"> <th>구분</th> <th>1등급</th> <th>2등급</th> <th>3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td> <td>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td> <td>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60천원</td> <td>144천원</td> <td>126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20천원</td> <td>36천원</td> <td>54천원</td> </tr> </tbody> </table> 2. 만20세 이상 심신유약자 : 140천원/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d9d9;"> <th>구분</th> <th>4등급</th> <th>5등급</th> <th>6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td> <td>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td> <td>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20천원</td> <td>112천원</td> <td>98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20천원</td> <td>28천원</td> <td>42천원</td> </tr> </tbody> </table> ○ 서비스 제공기간 : 10개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	160천원	144천원	126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36천원	54천원	구분	4등급	5등급	6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	120천원	112천원	98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28천원	42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	160천원	144천원	126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36천원	54천원																														
구분	4등급	5등급	6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	120천원	112천원	98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28천원	42천원																														

항목	내 용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이용 대상자 별 맞춤형운동 지도 서비스 제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7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30%;">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1. 장애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놀이치유 프로그램 : 웃음과 재미로 발달 도움 </td> <td>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 </td> </tr> <tr> <td> 2. 산모, 임산부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 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임산부요가, 라마즈 교육 등 건강증진 운동 </td> <td>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 </td> </tr> <tr> <td> 3. 노인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 운동 : 볼과 밴드를 이용한 근력, 근지구력, 평형성, 교차성 발달 지원 운동 - 전문장비를 활용한 운동지도 또는 수중운동, 댄스스포츠, 요가(필라테스) 등 </td> <td>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 </td> </tr> <tr> <td> 4. 만성질환자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지도 - 건강관리프로그램 : 식사조절 및 건강 교육, 정보제공 </td> <td>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 </td> </tr> <tr> <td> 5. 일반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장비를 이용한 운동, 복싱, 태권도 등 스트레스완화 운동 </td> <td>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 </td> </tr> </tbody> </table>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장애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놀이치유 프로그램 : 웃음과 재미로 발달 도움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	2. 산모, 임산부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 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임산부요가, 라마즈 교육 등 건강증진 운동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	3. 노인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 운동 : 볼과 밴드를 이용한 근력, 근지구력, 평형성, 교차성 발달 지원 운동 - 전문장비를 활용한 운동지도 또는 수중운동, 댄스스포츠, 요가(필라테스) 등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	4. 만성질환자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지도 - 건강관리프로그램 : 식사조절 및 건강 교육, 정보제공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	5. 일반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장비를 이용한 운동, 복싱, 태권도 등 스트레스완화 운동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장애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놀이치유 프로그램 : 웃음과 재미로 발달 도움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											
	2. 산모, 임산부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 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임산부요가, 라마즈 교육 등 건강증진 운동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											
	3. 노인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 운동 : 볼과 밴드를 이용한 근력, 근지구력, 평형성, 교차성 발달 지원 운동 - 전문장비를 활용한 운동지도 또는 수중운동, 댄스스포츠, 요가(필라테스) 등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											
	4. 만성질환자 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 유산소운동, 수중운동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지도 - 건강관리프로그램 : 식사조절 및 건강 교육, 정보제공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											
5. 일반인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 건강상담 : 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 필수프로그램 : 유산소운동, 장비를 이용한 운동, 복싱, 태권도 등 스트레스완화 운동	기본프로그램 :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 주2회, 회당 90분												
<p>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단계 : 서비스 등록, 상담, 욕구 판정 2.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통증치 검사 분석(사전검사 실시), 인바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검사 필수사항 : 콜레스테롤, 혈당검사, 빈혈검사 ※ 건강상담 시, 개인별 운동지도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 서류(운동지도기록지 등)를 필히 작성 3.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규모가 1:2인 이상일 경우, 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제공장소(소재지)를 필히 기입 4.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 5단계 : 기초체력 검사 및 사후관리(사후검사 실시) 													

항목	내 용
⑥ 집단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등급 : 제공인력 1명당 서비스 이용자 10인 이내 (1:1~1:10) ○ 4~6등급 : 제공인력 1명당 서비스 이용자 15인 이내 (1:1~1:15) ※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이용 운동 시 제공인력 1명당 서비스 이용자 8인 이내(1:1~1:8) ※서비스제공을 위한 전용시설(수영장, 강좌 전용공간) 이용시 제공인력 1명당 서비스 이용자 15인 이내(1:1~1:15)
⑦ 서비스 실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또는 재가방문형 (제공기관 선택) ○ 안전관리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 2. 기관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 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 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 3. 재가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공인력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② 연2회 이상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제공인력 보건 및 안전교육 실시 ○ 추가 확보시설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 (사전신고 필수) 2. 등록 시설 기준(33m)을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보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서는 권한 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 (경로당의 경우 지자체 소유는 구·군청장, 마을소유 또는 공동주택소유는 각 대표자와 협약) 3.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허용 사회복지거주시설 및 거주시설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 불가 4. 추가확보시설 변경 신청 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서식 제16호) 활용 5. 추가확보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인정 불가 ○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력산정기준 : 운동지도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관련 경력만 인정 2. 경력기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근근무경력 인정(주40시간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 ②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 (고용 또는 산재보험가입확인서 제출) 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ex) 2016.01.01.~2016.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 ※ 구·군은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 ※ 제공기관 자체경력의 경우 서비스 경력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록지 등 증빙서류 첨부 ○ 서비스 제공기록지는 제공기관 자체 양식 활용 가능하나 필수작성내용(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제공일시, 서비스 내용, 집단규모,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서명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인력은 제공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 된 사람으로 함. (위탁계약 및 위촉계약 불가)

항목	내용
⑥ 집단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5인 이내 (1:1~1:5) ○ 일반인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0인 이내 (1:1~1:10)
⑦ 서비스 실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 안전관리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 2. 기관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 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 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 ○ 추가 확보시설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 (사전신고 필수) 2. 등록 시설 기준(33m)을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보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서는 권한 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 (경로당의 경우 지지체 소유는 구·군청장, 마을소유 또는 공동주택소유는 각 대표자와 협약) 3.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허용 사회복지거주시설 및 거주시설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 불가 4. 추가확보시설 변경 신청 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서식 제16호) 활용 5. 추가확보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인정 불가 ○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력산정기준 : 직업능력개발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관련 경력만 인정 2. 경력기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근근무경력 인정(주40시간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 ②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 (고용 또는 산재보험가입확인서 제출) 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ex) 2016.01.01.~2016.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 ※ 구·군은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 ※ 제공기관 자체경력의 경우 서비스 경력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록지 등 증빙서류 첨부 ○ 서비스 제공기록지는 제공기관 자체 양식 활용 가능하나 필수작성내용(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제공일시, 서비스 내용, 집단규모,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서명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인력은 제공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 된 사람으로 함. (위탁계약 및 위촉계약 불가)

11 [170108] 부모학교 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전문 심리상담과 교육을 통한 가족 정서 회복과 유대감 향상으로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 능력, 태도 등을 지도하여 효과적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득 :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연 령 : 부모, 부부, 조부모, 자녀양육에 관심이 있는 성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1. 다자녀가구의 부모 또는 조부모</td> <td style="width: 50%;">2. 이혼숙려기간 부모 (신청 시 접수증명서 제출)</td> </tr> <tr> <td>3. 첫아이 가구의 부모 또는 조부모</td> <td>4. 한부모 또는 한부모의 조부모</td> </tr> <tr> <td colspan="2">5. 다문화가구(결혼이민자, 귀화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별 세부 순위는 신청자의 연령(적은 순), 소득수준 순 	1. 다자녀가구의 부모 또는 조부모	2. 이혼숙려기간 부모 (신청 시 접수증명서 제출)	3. 첫아이 가구의 부모 또는 조부모	4. 한부모 또는 한부모의 조부모	5. 다문화가구(결혼이민자, 귀화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1. 다자녀가구의 부모 또는 조부모	2. 이혼숙려기간 부모 (신청 시 접수증명서 제출)																
3. 첫아이 가구의 부모 또는 조부모	4. 한부모 또는 한부모의 조부모																
5. 다문화가구(결혼이민자, 귀화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③ 제공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학, 가정학, 상담학, 심리학, 미술치료학, 놀이치료학의 상담이나 교육관련 전임강사 또는 학위 취득 후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에서 상담이나 교육관련 강의경력 6개월 이상인 자 2. 사회복지학, 가정학, 상담학, 심리학, 미술치료학, 놀이치료학 학사학위 이상자로 가족상담 전문자격증 취득 후 가족상담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3. 사회복지학, 가정학, 상담학, 심리학, 미술치료학, 놀이치료학 석사학위 취득 후 가족상담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200천원/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25%;">1등급</th> <th style="width: 25%;">2등급</th> <th style="width: 35%;">3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td> <td>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td> <td>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70천원</td> <td>160천원</td> <td>140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30천원</td> <td>40천원</td> <td>60천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규제 완화사업 : 기준가격 대비 20%상향, 24만원까지 가능(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 ○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	170천원	160천원	140천원	본인부담금	30천원	40천원	60천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	170천원	160천원	140천원														
본인부담금	30천원	40천원	60천원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8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0%;">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1. 부모심리지원 프로그램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모와 자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불화를 조정하여 이해와 화목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지원 서비스, 배우자 등 가족사망 등 우울증 치유 (부부클리닉, 고부간의 갈등 등의 상담, 해소.치유, 교육 지원서비스) </td>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월4회 (필수 월3회, 선택 월1회) (1:1서비스 : 60분 1:2이상 : 120분) </td> </tr> <tr> <td>2. 자녀 양육 및 보육 교육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 태도 등을 지도하여 효과적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td> </tr> <tr> <td>3.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부관계 이해교육 ② 부부소통프로그램 ③ 건전한 부부생활 교육 </td> </tr> <tr> <td>4.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부모자조모임)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 향상 서비스(레크리에이션) ② 자아상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스트레스 지원 프로그램 / 가족역할 정립 및 치유 서비스 </td> </tr> </tbody> </table>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부모심리지원 프로그램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모와 자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불화를 조정하여 이해와 화목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지원 서비스, 배우자 등 가족사망 등 우울증 치유 (부부클리닉, 고부간의 갈등 등의 상담, 해소.치유, 교육 지원서비스) 	월4회 (필수 월3회, 선택 월1회) (1:1서비스 : 60분 1:2이상 : 120분)	2. 자녀 양육 및 보육 교육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 태도 등을 지도하여 효과적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3.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부관계 이해교육 ② 부부소통프로그램 ③ 건전한 부부생활 교육 	4.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부모자조모임)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 향상 서비스(레크리에이션) ② 자아상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스트레스 지원 프로그램 / 가족역할 정립 및 치유 서비스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부모심리지원 프로그램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모와 자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불화를 조정하여 이해와 화목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지원 서비스, 배우자 등 가족사망 등 우울증 치유 (부부클리닉, 고부간의 갈등 등의 상담, 해소.치유, 교육 지원서비스) 	월4회 (필수 월3회, 선택 월1회) (1:1서비스 : 60분 1:2이상 : 120분)																
2. 자녀 양육 및 보육 교육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 태도 등을 지도하여 효과적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3.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부관계 이해교육 ② 부부소통프로그램 ③ 건전한 부부생활 교육 																	
4.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부모자조모임)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 향상 서비스(레크리에이션) ② 자아상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스트레스 지원 프로그램 / 가족역할 정립 및 치유 서비스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단계 : 초기 상담 (서비스요구 조사, 효과성 측정을 위한 사전검사 의무실시) 2. 2단계 : 서비스 이용자 욕구 조사,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자의 성격 유형검사 3. 3단계 : 전문상담 및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필수 서비스 : 월3회, 선택 서비스 월1회) 4.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및 사례 관리 5. 5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요구 조사 (효과성 측정을 위한 사후검사 의무실시) <p>※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 (양육스트레스척도, 가족불화완화사례조사) 의무실시</p>
⑥ 집단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상담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 원칙 (1:1원칙) ○ 심리상담 외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8인 이내 (1:1~1:8)
⑦ 서비스 실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 안전관리기준 준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 2. 기관방문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 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 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 ○ 추가 확보시설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 (사전신고 필수) 2. 등록 시설 기준(33m)을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보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서는 권한 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 (경로당의 경우 지자체 소유는 구·군청장, 마을소유 또는 공동주택소유는 각 대표자와 협약) 3.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허용 사회복지거주시설 및 거주시설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 불가 4. 추가확보시설 변경 신청 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서식 제16호) 활용 5. 추가확보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인정 불가 ○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력산정기준 : 부모학교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관련 경력만 인정 2. 경력기간 산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근근무경력 인정(주40시간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 ②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 (고용 또는 산재보험가입확인서 제출) 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ex) 2016.01.01.~2016.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군은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 ※ 제공기관 자체경력인 경우 서비스 경력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록지 등 증빙서류 첨부 ○ 서비스 제공기록지는 제공기관 자체 양식 활용 가능하나 필수작성내용(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제공일시, 서비스 내용, 집단규모,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서명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사회복지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인력은 제공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 된 사람으로 함. (위탁계약 및 위촉계약 불가)

12 [170308] 임신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항목	내용																
① 목적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 및 정서안정 지원으로 산모의 자존감 향상,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경감과 산모의 생활건강 증진으로 출산과 양육을 장려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제한없음 ○ 선정기준 : 임신 3개월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2년 미만 산모 (출산 전)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출산 후)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 부모학교서비스,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 사랑나눔안마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 1. 미혼모, 한부모, 2. 첫아이가구, 3. 다문화가정, 4. 기초생활수급자 																
③ 제공 기관 및 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리상담 제공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심리, 상담,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등 심리상담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학위 취득 후 실무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②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2. 산모학교서비스 제공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산후관리사,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중 임신부 교육 또는 신생아 관리 관련 교육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② 아동복지학, 아동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등 관련학과 학사 이상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2항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중 한가지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임신부 교육 또는 신생아 관리 관련 교육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3.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태교, 문화활동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임신부 대상 관련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②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 중 임신부 교육관련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③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 ④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 제공종목은 동일 하여야 함), 동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운동지도경력 1년 이상인 자 ⑤ 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증 과정에 없는 종목의 경우(요가, 필라테스, 아쿠아로빅 등 체형교정 및 관리관련 종목)자격기본법에 의한 체형교정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p>○ 서비스 가격 : 200천원/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대상자</th> <th style="width: 25%;">1등급</th> <th style="width: 25%;">2등급</th> <th style="width: 35%;">3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수급자 차등위~중위소득 50% 이하</td> <td>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td> <td>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170천원</td> <td>160천원</td> <td>140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30천원</td> <td>40천원</td> <td>60천원</td> </tr> </tbody> </table> <p>○ 서비스 제공기간 : 10개월, 재판정 1회(우울증 고위험군)</p>	대상자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등위~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	170천원	160천원	140천원	본인부담금	30천원	40천원	60천원
대상자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등위~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	170천원	160천원	140천원														
본인부담금	30천원	40천원	60천원														

항목	내 용								
<p>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p>	<p>○ 서비스 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343 302 1452 757"> <thead> <tr> <th data-bbox="343 302 1241 342">서비스 내용</th> <th data-bbox="1241 302 1452 342">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43 342 1241 454"> 1. 심리지원서비스 ① 출산 전·후 우울증 예방,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 ② 출산 전·후 신체·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 </td> <td data-bbox="1241 342 1452 454"> 월2회 (회당 50분) </td> </tr> <tr> <td data-bbox="343 454 1241 607"> 2. 산모학교서비스 ① 산전교육: 태교, 출산교육, 임산부 위생교육 ② 산후교육: 신생아관리 위생교육, 베이비마사지, 이유식만들기 등 ③ 식단관리: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 식단관리 등 </td> <td data-bbox="1241 454 1452 607"> 월3회 (회당 50분) </td> </tr> <tr> <td data-bbox="343 607 1241 757"> 3. 건강증진서비스 ① 정서안정: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비스(명상·태교 교실) ② 건강체조: 가벼운 생활스트레칭, 임산부체조 ③ 체형교정: 출산 전·후 체형관리(골반교정, 안마 등)를 위한 부가서비스 </td> <td data-bbox="1241 607 1452 757"></td> </tr> </tbody> </table>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심리지원서비스 ① 출산 전·후 우울증 예방,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 ② 출산 전·후 신체·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	월2회 (회당 50분)	2. 산모학교서비스 ① 산전교육: 태교, 출산교육, 임산부 위생교육 ② 산후교육: 신생아관리 위생교육, 베이비마사지, 이유식만들기 등 ③ 식단관리: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 식단관리 등	월3회 (회당 50분)	3. 건강증진서비스 ① 정서안정: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비스(명상·태교 교실) ② 건강체조: 가벼운 생활스트레칭, 임산부체조 ③ 체형교정: 출산 전·후 체형관리(골반교정, 안마 등)를 위한 부가서비스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심리지원서비스 ① 출산 전·후 우울증 예방,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 ② 출산 전·후 신체·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	월2회 (회당 50분)								
2. 산모학교서비스 ① 산전교육: 태교, 출산교육, 임산부 위생교육 ② 산후교육: 신생아관리 위생교육, 베이비마사지, 이유식만들기 등 ③ 식단관리: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 식단관리 등	월3회 (회당 50분)								
3. 건강증진서비스 ① 정서안정: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비스(명상·태교 교실) ② 건강체조: 가벼운 생활스트레칭, 임산부체조 ③ 체형교정: 출산 전·후 체형관리(골반교정, 안마 등)를 위한 부가서비스									
<p>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p>	<p>○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 체계적인 진단을 통한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사전 심리검사 의무 실시)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심리지원서비스 월2회 이상 필수 ② 산모학교서비스 또는 건강증진 서비스 월3회 ③ 건강증진서비스는 관련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관련 단체 기관 협약을 통해 서비스 가능 ▶ 건강증진서비스는 관련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전문단체·기관 협약을 통해 서비스 가능 3단계 : 서비스 대한 만족도 및 재육구 조사(사후 심리검사 의무실시) ※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우울증 자가척도, 양육스트레스 척도(K-PSI)) 의무 실시 								
<p>⑥ 집단규모</p>	<p>○ 심리상담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 원칙(1:1 원칙) ○ 심리상담 외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5인 이내(1:1~1:5)</p>								
<p>⑦ 서비스 실시지역</p>	<p>○ 전 구·군</p>								
<p>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p>	<p>○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또는 재가방문형(제공기관 선택)</p> <p>○ 안전관리기준 준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 2. 기관방문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게 대하여 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 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 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 3. 재가방문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공인력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② 연2회 이상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제공인력 보건 및 안전교육 실시 <p>○ 추가 확보시설 조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 (사전신고 필수) 2. 등록 시설 기준(33㎡)을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보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 ※ 협약서는 권한 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 (경로당의 경우 지자체 소유는 구·군청장, 마을소유 또는 공동주택소유는 각 대표자와 협약) 3.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 ※ 단,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허용 사회복지거주시설 및 거주시설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 불가 4. 추가확보시설 변경 신청 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서식 제16호) 활용 5. 추가확보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인정 불가 								

-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
 - 1. 경력산정기준 : 성인대상 심리상담 및 산모학교서비스, 건강증진서비스(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관련 경력만 인정
 - 2. 경력기간 산정
 - ① 상근근무경력 인정(주40시간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
 - ② 시간제(주단위, 월단위 등) 경력 시 근무시간 명시(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
 - ③ 교육, 상담,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 보조진행, 봉사활동,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 (고용 또는 산재보험가입확인서 제출)
 - 3.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 ①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포함), 인적사항, 근무기간 및 시간
(ex) 2016.01.01.~2016.03.31. 주3회 일3시간, 총117시간, 근무내용(구체적 명시)
 - ※ 구·군은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
 - ※ 제공기관 자체경력의 경우 서비스 경력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록지 등 증빙서류 첨부
- 서비스 제공기록지는 제공기관 자체 양식 활용 가능하나 필수작성내용(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제공일시, 서비스 내용, 집단규모,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서명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인력은 제공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 된 사람으로 함. (위탁계약 및 위촉계약 불가)

13 [190308] 생활영농기술지원서비스

항목	내 용																
① 목적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설계 지원에 따른 생활영농기술 교육 및 체험 서비스를 통하여 도심 속 전원생활의 여가, 정서안정과 귀농·귀촌을 지원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득 : 중위소득 140% 이하 ○ 연 령 : 만40세~만65세 ○ 선정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심 속에서 전원생활의 여가 및 정서안정을 위한 설계하고 있는 가구 2. 퇴직 후의 은퇴설계 등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가구 ○ 우선순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50세 이상의 도심생활영농 또는 귀농귀촌을 설계하고 있는 사람으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은퇴자 ② 한부모 ③ 다자녀가구 ④ 독거세대 2. 만50세 미만의 도심생활영농 또는 귀농귀촌을 설계하고 있는 사람으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은퇴자 ② 한부모 ③ 다자녀가구 ④ 독거세대 																
③ 제공 기관 및 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을 전공한 전문학사 이상으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2. 농업, 특수작물, 생활농업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경작사실확인서, 농산물납품확인서 등으로 경력 확인) 3. 영농조합에 가입하고 관련 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180천원/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대상자</th> <th style="width: 25%;">1등급</th> <th style="width: 25%;">2등급</th> <th style="width: 35%;">3등급</th> </tr> </thead> <tbody> <tr> <td>대상자</td> <td>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td> <td>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td> <td>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td> </tr> <tr> <td>정부지원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160천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40천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20천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20천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천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60천원</td> </tr> </tbody> </table>	대상자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	160천원	140천원	12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40천원	60천원
	대상자	1등급	2등급	3등급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정부지원금	160천원	140천원	120천원													
본인부담금	20천원	40천원	60천원														
○ 서비스 제공기간 : 3개월 * 서비스 신청 후 5개월 내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내용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8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0%;">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1. 도심 전원환경 조성 과정 ① 전원주택 생활환경 조성 : 경계목, 담쟁이, 계절초 등 수목 설치 ② 여가생활을 위한 텃밭 조성 : 상자텃밭, 옥상텃밭, 농장텃밭 등 ③ 생활영농장비 사용교육 : 각종 영농 자재·장비 및 도구 사용 요령 </td>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월3회 (회당 60분) </td> </tr> <tr> <td> 2. 농작물, 수목 및 원예 관리 과정 ① 천연비료·약품 생산 및 사용교육 : 생활음식 등을 활용한 퇴비, 유기비료, 천연농약 ② 원예관리 과정 : 정서를 함양하는 화초, 수목 등 원예관리 과정 ③ 과수목 관리 과정 : 여가생활을 증진하는 전정작업, 접붙이기 등 실습·관리 과정 ④ 관상용 화초·토종작물 재배 : 심신 안정을 복돋는 관상용 화초, 토종 작물 </td> </tr> <tr> <td> 3.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건강 ① 반려동물 습성과 관리 방법 ② 집 지키는 가축 사육 및 관리방법 (거위, 오리, 닭 등) </td> </tr> <tr> <td> 4. 생활영농 심화 체험 ① 산나물, 야생버섯, 칩 등 야생초 교육 및 채취 ② 버섯재배, 건강 차 생산 실습 ③ 향토(저장) 음식 생산과정 (두부, 콩발효, 김치, 장아찌 등) 등 농촌문화 체험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월1회 (회당 90분) </td> </tr> </tbody> </table>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도심 전원환경 조성 과정 ① 전원주택 생활환경 조성 : 경계목, 담쟁이, 계절초 등 수목 설치 ② 여가생활을 위한 텃밭 조성 : 상자텃밭, 옥상텃밭, 농장텃밭 등 ③ 생활영농장비 사용교육 : 각종 영농 자재·장비 및 도구 사용 요령	월3회 (회당 60분)	2. 농작물, 수목 및 원예 관리 과정 ① 천연비료·약품 생산 및 사용교육 : 생활음식 등을 활용한 퇴비, 유기비료, 천연농약 ② 원예관리 과정 : 정서를 함양하는 화초, 수목 등 원예관리 과정 ③ 과수목 관리 과정 : 여가생활을 증진하는 전정작업, 접붙이기 등 실습·관리 과정 ④ 관상용 화초·토종작물 재배 : 심신 안정을 복돋는 관상용 화초, 토종 작물	3.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건강 ① 반려동물 습성과 관리 방법 ② 집 지키는 가축 사육 및 관리방법 (거위, 오리, 닭 등)	4. 생활영농 심화 체험 ① 산나물, 야생버섯, 칩 등 야생초 교육 및 채취 ② 버섯재배, 건강 차 생산 실습 ③ 향토(저장) 음식 생산과정 (두부, 콩발효, 김치, 장아찌 등) 등 농촌문화 체험	월1회 (회당 90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도심 전원환경 조성 과정 ① 전원주택 생활환경 조성 : 경계목, 담쟁이, 계절초 등 수목 설치 ② 여가생활을 위한 텃밭 조성 : 상자텃밭, 옥상텃밭, 농장텃밭 등 ③ 생활영농장비 사용교육 : 각종 영농 자재·장비 및 도구 사용 요령	월3회 (회당 60분)															
	2. 농작물, 수목 및 원예 관리 과정 ① 천연비료·약품 생산 및 사용교육 : 생활음식 등을 활용한 퇴비, 유기비료, 천연농약 ② 원예관리 과정 : 정서를 함양하는 화초, 수목 등 원예관리 과정 ③ 과수목 관리 과정 : 여가생활을 증진하는 전정작업, 접붙이기 등 실습·관리 과정 ④ 관상용 화초·토종작물 재배 : 심신 안정을 복돋는 관상용 화초, 토종 작물																
	3.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건강 ① 반려동물 습성과 관리 방법 ② 집 지키는 가축 사육 및 관리방법 (거위, 오리, 닭 등)																
4. 생활영농 심화 체험 ① 산나물, 야생버섯, 칩 등 야생초 교육 및 채취 ② 버섯재배, 건강 차 생산 실습 ③ 향토(저장) 음식 생산과정 (두부, 콩발효, 김치, 장아찌 등) 등 농촌문화 체험	월1회 (회당 90분)																
* 가격규제 완화 사업 : 기준가격 대비 20% 상향, 216천원 까지 가능 (정부지원금 120~160천원, 본인부담금은 기준가격에서 정부지원금 차액)																	

항목	내 용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단계 : 이용자 욕구조사 및 서비스계획 수립 (서비스 효과측정을 위한 사전검사 의무실시) 2. 2단계 : 이용자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3. 3단계 : 서비스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 (서비스 효과측정을 위한 사후검사 의무실시) <p>※ 이용자 대상 사전·사후검사 의무 실시 : 영농기술인지도, 생활만족도</p>
⑥ 집단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0인 이내 (1:1~1:10)
⑦ 서비스 실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구.군
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 ○ 안전관리기준 준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 2. 기관방문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 및 상해보험 등 가입 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 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 3. 집단활동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공인력 응급처치교육 연4시간 이상 의무수료 ② 표준계약서 안전사고에 대한 기준 제시 ③ 서비스 이용자 여행자보험가입 필수 ④ 서비스 이용자 안전교육 대장, 비상연락망, 보호자 동의서 ⑤ 숙박이나 체험시설 안전 확인 대장 ⑥ 여행사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차량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운전기사 재직증명서 구비 <p>※ 제공기관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자격기준을 갖춘 제공인력 1명 이상 의무동반 (미동반시 기준정보 및 집단규모 미준수 사례로 행정조치)</p> <p>※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위험에 대비한 사전·사후조치를 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지사, 지부, 가맹점 등 포함), 협력기관, 제공인력 등의 의무 이행 행태, 부정행위 등에 대해 책임을 진다.</p> ○ 추가 확보시설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서류 구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추가확보시설로 활용가능 (사전신고 필수) 2. 등록 시설 기준(33m)을 충족하고,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화재보험, 상해배상보험 등 증명서) 제출 필수 <p>※ 협약서는 권한 있는 실 사업자,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 (경로당의 경우 지자체 소유는 구군청장, 마을소유 또는 공동주택소유는 각 대표자와 협약)</p> 3.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 <p>※ 단,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은 허용</p> <p>사회복지거주시설 및 거주시설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 불가</p> 4. 추가확보시설 변경 신청 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서식 제16호) 활용 5. 추가확보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인정 불가 ○ 서비스 제공기록지는 제공기관 자체 양식 활용 가능하나 필수작성내용(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제공일시, 서비스 내용, 집단규모,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서명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사회복지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인력은 제공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 된 사람으로 함. (위탁계약 및 위촉계약 불가)

2018년 중위소득 산정기준표

1 기준중위소득 50%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36,000	27,572	4,704	28,497
2인	1,424,000	44,445	17,355	45,137
3인	1,842,000	58,049	34,209	58,731
4인	2,260,000	71,374	59,490	71,788
5인	2,678,000	84,229	84,091	84,887
6인	3,096,000	97,687	103,841	98,878
7인	3,514,000	110,096	122,508	111,500
8인	3,932,000	122,690	139,394	124,326
9인	4,350,000	137,557	156,996	139,572
10인	4,768,000	149,745	170,039	152,061

2 기준중위소득 100%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672,000	52,565	26,650	53,034
2인	2,847,000	89,641	92,445	90,485
3인	3,683,000	115,568	129,883	116,936
4인	4,519,000	141,300	161,163	143,379
5인	5,355,000	168,404	189,593	171,063
6인	6,191,000	195,224	217,535	198,786
7인	7,027,000	223,032	248,389	228,701
8인	7,863,000	249,924	274,069	258,360
9인	8,699,000	279,134	301,351	291,638
10인	9,536,000	306,683	326,539	324,976

3 기준중위소득 120%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007,000	63,395	45,733	64,142
2인	3,417,000	106,682	117,211	108,042
3인	4,420,000	139,572	159,232	141,300
4인	5,423,000	171,063	192,273	173,764
5인	6,426,000	202,519	225,054	206,355
6인	7,430,000	234,986	260,122	242,183
7인	8,433,000	268,167	291,169	279,134
8인	9,436,000	306,683	326,539	324,976
9인	10,439,000	352,610	363,427	382,121
10인	11,443,000	382,121	382,610	410,811

4 기준중위소득 140%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41,000	73,222	63,659	74,142
2인	3,986,000	125,376	143,229	127,023
3인	5,156,000	163,172	184,310	165,762
4인	6,327,000	198,786	221,190	202,519
5인	7,497,000	234,986	260,122	242,183
6인	8,668,000	279,134	301,351	291,638
7인	9,838,000	324,976	342,920	352,610
8인	11,009,000	352,610	363,427	382,121
9인	12,179,000	382,121	382,610	410,811
10인	13,350,000	454,412	420,433	527,607

5 기준 중위소득 150%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508,000	79,122	76,097	80,039
2인	4,271,000	133,811	153,025	135,662
3인	5,525,000	173,764	195,109	176,657
4인	6,779,000	214,407	238,237	218,525
5인	8,033,000	258,360	282,164	268,167
6인	9,287,000	291,638	312,942	306,683
7인	10,541,000	352,610	363,427	382,121
8인	11,795,000	382,121	382,610	410,811
9인	13,049,000	410,811	399,121	454,412
10인	14,303,000	454,412	420,433	527,607